

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95. 10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사유

도내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갖고 연구노력하는 개인, 단체, 법인등을 명예연구소로 지정함으로서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, 나아가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(안 제2조)
- 지정 및 행·재정적 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
- 연구성과평가회 개최(안 제7조)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

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내 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고 있는 개인, 단체, 법인등을 충청북도명예연구소(이하 “명예연구소”라 한다)로 지정,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토록하여 도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정요건 및 대상분야) 명예연구소로 지정될수 있는 자격요건은 도내에 거주하며, 그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.단체.법인으로서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행정기관 및 학계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.

1. 농업분야 : 농축산품종개발, 신품종묘목생산, 재배기술개선등
2. 공업분야 : 새로운 기계제작, 신제품생산등
3. 관광분야 : 새로운 관광상품개발, 향토음식개발등
4. 환경분야 : 폐기물재활용,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등

제3조 (명예연구원) 명예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에 임하는 자를 명예연구원이라 칭한다.

제4조 (심의기관)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.

1. 명예연구소지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
2.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.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주요사항

제5조 (지정) ①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(1월, 7월)로 하되, 시장, 군수, 출장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희망자를 파악하여 1개월전까지 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기획관실에서는 관련 실.국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.

제6조 (행.재정적 지원) 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, 총괄업무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.국에서 주관한다.

1. 예산법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
2. 명예연구소와 산.학.연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
3. 우수명예연구소에 각종시험사업 또는 용역 의뢰
4. 필요한 정보.자료제공
5. 각종 정책자금융자 및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등

제7조 (연구성과평가회) ①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평가회를 개최한다.

②평가결과 우수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. 다만,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지정해제) 지정된 명예연구소가 다음각호의 사항에 해당 할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명예연구원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 시
2.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 시
3. 연구실적이 미흡할 시

제9조 (홍보) 도지사와 시장,군수,출장소장은 지정된 연구소의 연구분야 내용을 관내에 널리 홍보한다.

제10조 (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